|  |  |
| --- | --- |
|  | **발신번호 4개 이상 등록 신청서** |
| ※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-6008-1469 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※ 해당 신청서 제출 시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 ‘개수’만 늘어납니다. 사용하실 발신번호는 사이트에서 별도 등록해주세요. |  |

|  |
| --- |
| ▶ 신청고객 정보 |
| 이름  |  | 유선번호 |  |
| 이메일 주소  |  | 휴대폰번호 |  |
| ▶ 신청내용  |
| 사이트명 | **반값문자** |
| 아이디(ID) |  |
| 발신번호 4개이상 등록 신청 동의 | **가. 회사의 의무**1. 회사는 스팸메세지 ∙ 문자피싱메세지∙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.**나. 이용자의 의무**1. 이용자는 스팸메세지 ∙ 문자피싱메세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 ∙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2.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는 전단의 서비스 차단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3. 본 조 제 2항의 경우, 회사는 차단 된 문자 서비스에 관한 자료(변작된 발신번호, 차단시각, 전송자명 등)를 1년간 보관.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**다.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**1.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.①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번호,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**라. 계약해지**1. 방송통신위원회 ∙ 한국인터넷진흥원 ∙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세지 ∙ 문자피싱메세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2. 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**위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동의합니다.**  |
|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및 ‘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’에 의해서 위와 같이 발신번호 4개 이상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청합니다.  20 년 월 일 신청자명 (직인) |